

거창군 체육진흥조례안

의안 번호	2007 ~ 3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7. 9. 18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정이유

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, 체육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전문체육의 육성(안 제3조)

- 우수선수의 과학적,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.

나. 생활체육의 육성(안 제4조)

-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다. 직장체육의 육성(안 제5조)

-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 동호회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.

라. 학교체육의 진흥(안 제6조)

- 학교체육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마. 포상(안 제7조)

-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
- 체육행정, 재정지원, 체육홍보 등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

바. 경비의 지원(안 제8조)

- 범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,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, 국내국제대회의 유치 및 진행, 홍보에 필요한 경비,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여가체육의 지도 보급, 체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,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지원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 및 제8조
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
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
「경상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」
「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667,600천원(2007년 당초예산)
307-02(민간경상보조) 44,000천원
307-04(민간행사보조위탁)623,600천원

다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(2) 입법예고(2007. 6. 22. ~ 7. 11.)결과 : 의견없음

거창군 체육진흥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군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체육”이란 운동경기,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전문체육”이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.
3. “생활체육”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.
4. “체육회”란 군내 경기단체(이하“경기단체”라 한다)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, 체육경기 개최와 선수양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전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는 군내 체육단체(이하“체육단체”라 한다)를 말한다.
5. “생활체육단체”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소속 종목 단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전문체육의 육성) ①우수선수의 과학적,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.

②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
2.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
3.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생활체육의 육성) ①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②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
2.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
3. 그 밖에 군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

제5조(직장체육의 진흥) ①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.

②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(학교체육의 진흥) 학교체육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①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
③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
2. 체육행정, 재정지원,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
3. 그 밖에 군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

④상장은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자 및 운동경기부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.

제8조(경비의 지원) ①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범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
2.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
3. 국내·국제 대회의 유치 및 진행, 홍보에 필요한 경비
4.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여가체육의 지도·보급
5. 체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
6.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
7. 학교체육 우수 운동경기부의 육성
8.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